

의안번호	제 674 호
의 결 연 월 일	2021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21년 4월 13일

#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7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1. 4. 13.  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## 1. 제안이유

학교 운동장의 안정성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규정을 의무화하여 유해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등으로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장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유해성 조사에 대한 의무규정 및 검사 위탁 사항 정비(안 제5조)

- 1) 학교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(안 제5조제1항)
- 2) 실태 조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제2항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별첨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: 합의기관없음

라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- 2) 입법예고(2021. 2. 5. ~ 2021. 2. 25.): 의견 없음
- 3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4) 부패영향평가: 원안 동의
- 5) 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 동의

##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학교”를 “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”로, “실시할 수 있다”를 “실시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5조(실태 조사)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<u>학교</u>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<u>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	<p>제5조(실태 조사) ① ----- ----- ----- <u>각급 학교</u> <u>를 대상으로 학교</u> ----- ----- <u>실시하고</u> <u>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</u> <u>한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</u> <u>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</u> <u>위탁할 수 있다.</u></p>

## 관계법령

### □ 학교보건법 시행규칙[교육부령 제194호, 2019.10.24., 일부개정]

**제3조(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)** ① 「학교보건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·관리해야 하는 학교 시설[(校舎垡地)·체육장·교사·체육관·기숙사 및 급식시설,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 한다. 이하 같다]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의2.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.

②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.

**제3조의2(검사요청 등)** ① 법 제4조에 따른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점검방법의 지도 및 전문인력등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학교에 대하여 오염물질을 직접 검사하게 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.

### ※ 학교보건법 시행규칙[별표 2의2]

####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(제3조제1항제1호의2 관련)

1. 체육장 등의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는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
2. 제1호에 따라 설치한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의 파손 여부,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, 필요한 조치를 할 것